

「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시행규칙」 입법예고(안) 일부 변경사항 사전 안내

□ 개요

- '22년 4월 28일 입법예고된 「소방시설법 시행령, 시행규칙」 개정안 중 일부 수정사항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중임을 안내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관련규정	입법예고(안)	수정(안)
가.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(시행령 제36조)	시행일 <u>2022년 12월 1일</u>	시행일 <u>2026년 12월 1일</u>
나.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(시행규칙 별표 4 제7호)	시행일 <u>2022년 12월 1일</u>	시행일 <u>2023년 1월 1일</u>
다.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, 시험과목, <u>시험과목의 면제(1차, 2차) 적용례</u> (시행령 제36조, 제38 조, 제40조)	○ <u>시행일 2026년 12월 1일</u> ○ 종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, 제29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,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는 <u>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</u> (이 경우 2026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7년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)	